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17시 54분



목차

목차	2
완료된 입법예고	3
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

진행중인 입법예고

완료된 입법예고

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.03.06 00:00 등록자 박민우 061-659-4567 주차차량과 공고(입법예고)

「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6.(월) ~ 3. 26.(일), (20일간)
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3. 26.(일)까지
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화, 이메일, 팩스

마. 문 의 사 항 : 주차차량과 061-659-4567

바. 기 타 사 항 : 공고문 참고

첨부파일

 입법예고문(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).hwp[미리보기](#)

목록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